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범위 확대〉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96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94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박홍배의원안(의안번호 제2209796호)	1
II . 이용우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94)	3
III. 검토의견	6
1. 개정안의 주요내용	6
2. 검토의견	8

I. 박홍배의원안(의안번호 제2209796호)

1. 제안경위

1.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4. 14.
3. 회부일 : 2025. 4.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일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채용비리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부재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으로 사건을 이관하거나, 출석 및 자료제출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하였으나, 대부분이 과태료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반복되는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에 해당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 제고와 공정한 노동 시장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II. 이용우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94)

1.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4. 28.
3. 회부일 : 2025. 4. 29.

2.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노동관계법 중 일부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소개를 이른바 ‘가짜 3.3’으로 불리는 탈법적 노무제공계약으로 둔갑하여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아닌 통상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채용 전 범죄는 경찰이, 채용 이후의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연속

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그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는 이 법에 「고용보험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과 업무성격 및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중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처우를 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0호 신설).

나.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미성년자에게 연

장근로를 시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1호 신설).

다.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직접 관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외국인근로자 선발 불법개입, 사업장변경 방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2호 신설).

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3호 신설).

마.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직업소개·근로자공급사업·구인광고 및 그 사업의 신고 등에 직접 관련된 「직업안정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4호 신설).

바.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채용광고에 직접 관련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거짓 채용광고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박홍배 의원안은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안 제6조의2제1항제20호 신설), 이용우 의원안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현행	박홍배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 ----- ----- ----- ----- -----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 ----- ----- ----- ----- ----- -----

현행	박홍배 의원안	이용우 의원안
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19. (생략) <u><신설></u>	-----. 1. ~ 19. (현행과 같음) 20. 「채용절차의 공 정화에 관한 법 률」	-----. 1. ~ 19. (현행과 같음) 20. 「고용보험 법」 (제116조제 2항제1호만 해 당한다) 21. 「산업현장 일 학습병행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만 해당한다) 22.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3. 「직업교육훈 련 촉진법」 24. 「직업안정 법」 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4.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14,273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5,995명에 이르고 있음.

나.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범위>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 박홍배 의원안 및 이용우 의원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추가되는 범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용우 의원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추가되는 범죄는

① 「고용보험법」 제105조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이유로한 불이익 처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1호는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호	
제17조(피보험자격을 확인) ①피보험자²⁾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②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금지 의무” 및 같은 조 제3항의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0조제1항은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및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제27조(학습근로시간 및 휴식)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³⁾를 준용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 금지 의무”, 제16조의 “근로관

- 2)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 3)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귀국에 필요한 조치 의무”, 제19조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의무”, 제25조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방해 금지의무” 및 제27조 제4항의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29조는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의 “출국만기보험등 가입의무” 및 제23조의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30조는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아 하는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④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의 “현장실습 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26조는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직업안정법」 제46조는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 또는 제33조제1항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의무”, 제21조의 “성명 등의 대여 금지 의무”,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준수 의무”, 제32조의 “금품등의 수령 금지 의무”, 제34조의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7조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무료직업소개사업등의 신고 의무”, 제36조의 “사업 정지기간 준수 의무”, 제42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8조는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해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⁴⁾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같은 법 제102조⁵⁾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등의 현장조사 및 서류

4)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5)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범위 확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정안에 포함된 6개 법률이 근로감독관 업무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②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에 포함된 6개 법률 모두의 법 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가지며, 범죄혐의 발견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1]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4.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21
2	기획재정부(국세청)	조세 관련 범죄	5,159
3	법무부(교소도 등)	교도소, 구치소 내 발생 범죄	1,189
4	국방부(방첩사령부 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범죄	305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59
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사범 등	2,199
7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
8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문화유산법 위반 사범	8
9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10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범	1,004
11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 범죄	46
1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위반 범죄	193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59
14	산업통상자원부(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법 위반 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9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3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78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87
19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
2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3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21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55
22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 발생 범죄 등	460
23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33
25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범죄	170
26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494
27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9
28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등 안전 규제 위반 범죄	2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등 위반 사범	41
30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9
31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3
3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범죄	51
33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32
합 계			14,273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차량운행제한, 환경 등 관련 범죄	375
2	부산광역시	〃	336
3	인천광역시	〃	368
4	대구광역시	〃	191
5	대전광역시	〃	188
6	광주광역시	〃	196
7	울산광역시	〃	253
8	세종특별자치시	〃	43
9	경기도	〃	669
10	경상남도	〃	375
11	경상북도	〃	622
12	충청남도	〃	517
13	충청북도	〃	519
14	전라남도	〃	460
15	전북특별자치도	〃	277
16	강원특별자치도	〃	590
17	제주특별자치도	〃	16
합 계			5,995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